

2015.5.22.(금)/1일간

제2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4
2.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5
3.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5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○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5. 12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주택법」(법률 제12115호, 시행 2013. 12. 24.)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,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
- 주요내용
 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 2)
 - 소규모 공동주택(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)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관리를 전문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 등)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
 - 장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(안 제12조~제22조)
 - 층간소음 등 당사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운영 규정 신설
 -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,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시행, 지원금의 사용과 정산 등에 필요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정
- 법적근거 : 「주택법」(법률 제12115호, 2013. 12. 24. 시행)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례 반영 통보
(국토교통부, 2015. 3. 18.)
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5. 5. 22.) ※ 붙임 참조

2.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5. 22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2004년 6월 주민세 인상(4천원) 후 10년간 동결되어 세율의 현실화 필요
 - 세율인상을 통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 탈피
- 주요내용
 -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 인상 : 4천원 → 7천원(안 제6조)
- 법적근거 : 「지방세법」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5. 5. 22.)

3.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5. 22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 재해위험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, 자율방재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자 일부개정 근거규정 마련코자함.
- 주요내용

○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구성 변경(안 제3조)

- 단원 인원(변경)

· 당초 : 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50명이 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· 변경 : 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-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하고, 단원증 교부항목 삭제(변경)

· 당초 :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,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, 제1-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.

· 변경 :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, 전문회원으로 구분할수 있으며,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, 제1-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방재업무의 효율성 및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읍면 방재단 구성 및 대표 선출(신설)

-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읍·면방재단 대표 중에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(신설)

▪ 법적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5. 5. 22.)

[붙임]

**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한 수정안**

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3조 제2항 중 “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%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” 을 “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%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과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” 로 하고, 제4조 제7호 “방법용 CCTV 설치” 를 “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대상 범위) ① (생략) ② ----- ----- <u>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 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 업용 비율이 50%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</u> ----- ③ (생략)	제3조(지원대상 범위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 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 업용 비율이 50%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과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</u> ----- ③ 개정안과 같음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지원대상 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단지 내 도로·주차장 및 보안등의 보수</u></p> <p>2. <u>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, 휴게시설의 보수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</u></p> <p>5. <u>실외 운동시설의 보수</u></p> <p>6. <u>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</u></p> <p>7. <u>방범용 CCTV 설치</u></p>	<p>제4조(지원대상 사업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6. 개정안과 같음</p> <p>7. <u>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</u></p>